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787
----------	-------

제안연월일 : 2026. 2.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No.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584	김선민 의원	2024.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4.11.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심사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2.3) 상정·심사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4)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2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73	서영교 의원	2024.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4.11.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심사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2.3) 상정·심사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4)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No.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3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876	김용만 의원	2024.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4.11.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심사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2. 3) 상정·심사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2. 4)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4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74	백승아 의원	2025.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2.28.)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심사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2. 3) 상정·심사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2. 4)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5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648	강경숙 의원	2025.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2.28.)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심사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2. 3) 상정·심사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2. 4)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6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965	박홍배 의원	2025.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9.22.)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심사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2. 3) 상정·심사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2. 4)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No.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7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65	이정현 의원	2025.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11.28.)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2. 3) 상정·심사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2. 4)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8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200057	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	2024.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장이 청원심사소위 회부 (2025.2.13.) ○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5.4.3.)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9.22) 상정·심사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2. 3) 상정·심사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2. 4)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4.)는 위 7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2. 5.)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7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신설).

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 신설).

라.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 17조 신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을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

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신 설></u></p> <p>1. “<u>일본군위안부 피해자</u>”란 <u>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u>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10조(실태조사) ① (생략)</p> <p><u><신 설></u></p> <p>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u></p>	<p>제2조(정의) ----- -----.</p> <p>1. “<u>일본군위안부 피해</u>”란 <u>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u>를 말한다.</p> <p>2. ----- 제1호의 <u>피해를 입은 사람</u>를-----.</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제10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③ <u>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u></p>

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